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회)	

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의2제4항제6호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2조의2(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 ① 삭제 ②·③ (생략)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. 1. ~ 5. (생략) 6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(이하 이 호에서 “공공매입임대주택”이라 한다)을 건설할 자(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)에게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7. (생략) ⑤ ~ ⑨ (생략)	제92조의2(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7. (현행과 같음) 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12